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미경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328
----------	------

발 의 년 월 일: 2025년 01월 20일

발 의 자: 심미경, 강석주, 구미경,
김영철, 김원중, 김원태,
김재진, 김태수, 김혜영,
남궁역, 남창진, 민병주,
박춘선, 서상열, 서호연,
신복자, 유만희, 유정인,
윤기섭, 이봉준, 이상욱,
이성배, 이종환, 정지웅,
최민규, 허 훈, 홍국표,
황철규 의원(28명)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서울시교육청”)은 「교육환경법」 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관련 사무를 수행하고 있음.
- 교육환경 관리를 위한 여러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대도시 특성(예: 높은 인구 밀도, 상업 시설의 밀집, 대규모 재개발 등)으로 인해 평가나 규제, 허용기준을 마련하는 데 많은 한계가 있음. 특히, 지역 재개발 과정에서 소음이나 공해 등의 구체적인 허용 기준, 특정 지역에서 제한되는 시설의 종류, 허가 절차 등을 지역적 특성에 맞게 명확하게 규제를 설정하기 어려워, 평가의 일관성이나 실효성이 낮아 주민 및 학생의 안전과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서울시와 각 자치구 간의 세부적인 역할 분담이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 주민과의 소통과 협력을 제도화 하여 주민 및 학생의 안전과 이익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에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등의 의견수렴”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여 지역사회와의 협력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이를 통해 교육환경평가 결과의 관리 및 실행에서 주민 민원 및 갈등 등의 비효율을 개선하고 주민의 만족도와 신뢰를 크게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2. 주요내용

가. 책무(제4조)

-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이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책무를 명시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교육환경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교육감은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이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책무) ①·② (생략) <u><신설></u>	제3조(책무)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교육감은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이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제3항 교육감은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이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일부개정으로 조문 단독으로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희선
추계세제팀장	김중헌
추계분석관	이홍래

☎ 02-2180-7952
e-mail : hongl004@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